소규모 합병 공고

주식회사 두산은 주식회사 퓨얼셀파워와 2014 년 7 월 10 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- 1. 합병방법 : 주식회사 두산이 주식회사 퓨얼셀파워를 흡수합병함
- 2. 합병비율 : 주식회사 두산 : 주식회사 퓨얼셀파워=1:0.1154605
- 3. 소멸회사의 현황

가. 상 호 : 주식회사 퓨얼셀파워

나. 본점 소재지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남로 230 D-101(야탑동, 분당테크노파크)

- 4. 합병기일 : 2014년 9월 30일
- 5. 본건 합병은 주식회사 두산의 입장에서 상법 제 527 조의 3 제 1 항 소정의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, 상법 제 527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- 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- 가. 행사절차 : 2014 년 7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(우선주주 포함) 중 본건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그 반대의사를 아래와 같이 통지서를 제출하는 방 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.
 - 나. 제출기간 : 2014 년 7월 24일 ~ 2014 년 8월 7일
 - 나. 행사방법 및 장소
 - 1) 명부주주 : 2014 년 8 월 7 일까지 주식회사 두산 관리본부 기획팀 제출(02-3398-1281)
 - 2) 실질주주 : 2014 년 8월 5일까지(행사기간 만료 2 영업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 - 다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 - 라.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

.....

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귀하

본인은, 주식회사 두산이 주식회사 퓨얼셀파워를 이사회 승인으로써 합병함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 주 번 호	주 주 명	
소유주식의 종류	소유주식수	

2014 년 월 일

성 명: 주 소: 주민등록번호(앞 6 자리 기재):

2014년 7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가 18-12 (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) 주식회사 두 산 대표이사 이 재 경